
인사말

-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02
-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04

발제

- 발제 1 : 계약 해지를 통한 하청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의 법률적 문제점
_ 이수열 변호사 07
- 발제 2 : 쿠팡의 클렌징 제도와 대리점 계약 현황으로 본 노동조합
탄압 현황 _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준비위원장 15

토론

- 토론 1 : 쿠팡의 대리점 계약해지, 클렌징 제도의 법률적 문제
_ 조혜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 29
- 토론 2 : 쿠팡의 노동을 대하는 방식의 문제와 불법성
_ 박석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37
- 토론 3 : 쿠팡의 노동탄압 사례
_ 김혜진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 집행위원장 43
- 토론 4 : 고용노동부 담당자 49

쿠팡(CLS)의 대리점 계약 해지 및 클렌징 사례로
보는 하청노동자 노동권 보호 토론회

인사말

인사말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반갑습니다. 서비스연맹 위원장 강규혁입니다.

오늘 쿠팡의 대리점 계약해지 및 클렌징 사례로 보는 하청노동자 노동권보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이수열 변호사님과 현장이야기를 해주실 강민욱 준비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로 함께해 주신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님과 택배과로 사대책위 박석운 대표님, 쿠팡대책위 김혜진 집행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쿠팡은 택배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며 택배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서비스연맹은 택배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쿠팡-대리점, 대리점-택배기사 간의 기형적 계약구조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쿠팡이 만들어낸 클렌징 제도는 개별 택배기사들의 업무를 매일 매주 평가하는 방식으로 과로노동을 양산할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택배기사의 배송구역을 뺏어가 사실상 해고 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클렌징 제도는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일터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금지조치를 당해 클렌징되고 있고, 클렌징 제도 때문에 합법적 쟁의행위도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쿠팡은 노동조합이 조직된 대리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모든 라우터(배송지역)의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쿠팡의 ‘혁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과로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 즉 노동의 권리마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쿠팡의 경영진에는 법조인이 많습니다. 쿠팡의 강한승 대표이사도, 쿠팡CLS 흥준용 대표이사도 김앤장 출신입니다. 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법을 피하는 방법, 노동을 교묘하게 탄압하는 방법, 고용의 의무를 회피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쿠팡이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쿠팡이 언론인과 정치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현장에 취업을 제한해 왔다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모순이 축적되면 언젠간 터지게 마련입니다. 편법, 불법이 일시적으로 힘을 발휘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양심있는 내부자의 고발이 있을것이고, 사회적 지탄과 노동자의 저항도 있을것입니다. 이런 경영행태를 국민들도 소비자도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도 그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상생이나 ESG경영은 노동자의 언어가 아니라 기업가의 언어입니다. 노동자나 국민만 좋으라고 만든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회사가 살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쿠팡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규혁



강성희
진보당(전주시을)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반갑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최근 쿠팡의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쿠팡 풀필먼트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의 개인정보와 개별 사유까지 기재되어 있어, 쿠팡이 취업을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상 근로할 권리를 침해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심각한 불법입니다. 쿠팡의 노동자 옥죄기와 노조탄압 등의 불법행위는 이번 ‘블랙리스트’공개 전부터 계속 지적되었습니다.

2020년 택배노동자들이 연이어 과로사로 돌아가시고 나서야,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택배 현장에서의 과로사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쿠팡의 대량해고가 택배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쿠팡의 클렌징 제도입니다. 클렌징 제도는 구역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를 대리점과 작성한 뒤 구역 회수를 통해 대리점 간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택배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상시해고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수행률 하락 등의 이유로 언제든지 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왔으며, 클렌징을 당하면 구역과 수입이 없어지는 사실상 해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택배노동자들은 클렌징에 대한 불안함으로 원청과 대리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고 합법적 쟁의행위에도 해고 위협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해 4월 쿠팡 킥플렉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쿠팡의 구역회수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노동자가 78.7%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쿠팡CLS의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제도를 방치한다면 다른 택배사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택배노동자들의 목숨으로 이루어진 사회적합의는 사실상 파기되고 다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열리는 토론회에서 쿠팡의 노조탄압과 택배노동자들을 상시 해고 위기로 몰아넣는 클렌징 제도에 대한 대책이 토론되고, 나아가 모든 하청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 되길 기원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올 때까지 진보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계약 해지를 통한 하청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의 법률적 문제점

- 이수열 변호사 -

1. 들어가며

현재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마치 자신이 고용한 것처럼 사용하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이 만연해 있음. 사용자들은 고용을 간접화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잠탈하여 하청업체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쉬운 해고’를 달성할 수 있었고,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면 하청업체 폐업을 통해 아예 봉쇄하는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왔음.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원청과 대리점, 대리점과 노동자 사이에서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계약기간 만료통지와 위장폐업이라는 이중의 ‘쉬운 해고’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져 있음.

현재 쿠팡로지스틱스는 조합활동을 핑계로 대리점에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면서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바, 관련 법리 및 판결례에 비추어 쿠팡CLS 계약기간 만료통지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확인하겠음.

2. 관련 법리 및 판결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특히,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이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갱신의 횟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실태 등과 아울러 사용자가 들고 있는 갱신 거절 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거절 사유가 존재할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된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한 조치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등 참조)

나.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 하청업체의 위장폐업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사이에 직접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위 조항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 시정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상의 고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사용사업주는 위 조항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구체적으로, 기준에 따라 ① 원청이 작업내용 전반에 직접 관리한 점, ② 원청이 작업 일시, 시간, 장소, 내용 등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결정한 점, ③ 사내 하청회사는 원청의 결정에 따라 어느 근로자를 종사시킬지 여부만 결정한 점, ④ 직영근로자와 함께 선박건조업무에 종사한 점, ⑤ 작업 진행방법, 작업시간 및 연장, 휴식, 야간근로 등이 원청의 지휘감독하에 놓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 부당노동행위 성립과 관련, ① 원청은 개별도급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련하여 사내 협력업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고, 사내 협력업체의 노사분규로 인한 파업,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인상 등은 원청에게 경영상 타격을 주는 것으로 원청과 무관할 수 없음, ② 사내 협력업체들은 경영상 폐업할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 설립 직후에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임원임이 드러나고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요구를 받은 즉시 폐업을 결정한 점으로 볼

때, 위 사내 협력업체들의 폐업이유는 참가인 조합의 설립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 ③ 사내 협력업체의 폐업공고 직후 다른 협력업체가 설립되어 노동자를 모집하고 해당 공정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영세하고 정보력이 부족한 사내 협력업체들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 폐업 및 직원모집, 회사설립 등의 복잡한 업무를 원고 회사의 운영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위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④ 사내 협력업체 대부분이 원고 회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도급계약의 해지는 곧 사내 협력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원고 회사로부터 소속 근로자가 원고 회사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회사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계약해지 등의 경고를 받은 소외 26 주식회사, 소외 28 주식회사, 소외 19 주식회사 등의 협력업체들도 위 경고 이후에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청이 사내 협력업체들의 잦은 폐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아 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464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¹⁾ : 이른바 지배력설(위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에 따라 원청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임을 인정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856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 참조).

-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가 근로조건인 교섭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근로자가 해당 근로조건을 사업주의 의사대로 또는 정해진 대로 복종하여 따를 수밖에 없어 사업주가 해당 근로조건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회사와 지배점의 관계, 지배점 택배기사의 업무가 상시적·필수적인 업무인지, 회사의 사업체계의 일부로 편입됨으로써 근로조건을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회사의 지위가 지속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대법원 계속 중

라. 서울고등법원 2022.5.19. 선고 2021누53216 판결²⁾ : 대리점 카마스터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통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카마스터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대리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대리점주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조합원과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이 종결되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한 사안에서, ① 해당 대리점의 판매노동자들 대다수가 장기간 근무하여왔는데, 별도의 계약 갱신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가 재계약 거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월 평균 판매량의 경우, 해당 조합원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실적을 보인 노동자와 계약을 갱신하는 등 절대적 기준이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③ 대리점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도록 하는 등 해당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식하고 그 활동을 방해할 의도를 가졌거나 조합원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적어도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된다.

마. 소결

- 우리 법원은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라 원청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원청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사용자의 개념을 점차 확장해 오고 있음.

- 또한 위장폐업, 계약기간 만료통지와 같이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것 같은 외견이 있는 경우에도 원청이 근로조건에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서, 경영 상황이나 계약갱신기준 등 폐업이나 계약갱신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없고, 그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있음.

3.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

○ 쿠팡로지스틱스는 택배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영업점 택배노동자들이 담당하는 배송 업무는 쿠팡로지스틱스의 가장 본질적이고, 필수적

2) 사용자 항소 포기로 확정

인 상시 업무에 해당하고, 당연히 원청의 운송시스템 및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있음.

- 쿠팡로지스틱스는 자의적으로 물량을 조절(영업점 계약서 제3조³⁾)할 수 있고, 배송수수료 등 근로조건은 쿠팡로지스틱스가 영업점에게 위탁하는 물량에 전적으로 연동(영업점 계약서 제6조⁴⁾)되어 있어 원청이 택배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함.

- 영업점은 직접 택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컨베이어벨트나 물류창고 등 독립적인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배송업무 관리만을 주로 할 뿐이고, 쿠팡로지스틱스는 사업의 특성상 쿠팡로지스틱스의 시스템을 반드시 활용하여야 하고, 배송상품 인수시간, 반품일자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음.

- 이처럼, 영업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회사의 지배는 회사가 형성한 사업적 특성상 구조적일 수 밖에 없고, 원청의 지배력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임.

○ 쿠팡로지스틱스는 노골적으로 쿠팡CLS 지회의 조합활동을 대리점에 대한 계약갱신 거부 사유로 삼고 있음.

- 쿠팡로지스틱스가 계약갱신 거부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음.

- | |
|---|
| <p>① 귀사 소속 임원 및 배송기사들의 당사 임직원에 대한 폭행, 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p> <p>② 귀사의 대표자 및 소속 임원, 배송기사들의 당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p> <p>③ 기타 신뢰관계 훼손 행위</p> |
|---|

- 위 사유는 노동조합의 일상적 조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들임. 구체적으로, 원청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자, 원청이 상급단체 간부 및 분당지회장의 진입을 가로막아 발생한 행위들을 폭행, 침입, 업무방해라고 규정, 그에 대한 반박 내지 비판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계약갱신 영업점에 대한 거부 내지 계약기간 만료통지 사유로 삼고 있음.

- 대법원 2015도1927 판결은 “그러나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하여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 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여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인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인 노조활동 및 쟁의활동

3) 택배 영업점 계약서 제3조 “영업점에게 어떠한 독점적 권리 또는 최소 물량 또는 고정적인 물량의 위탁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원청이 물량을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

4) 택배 영업점 계약서 제6조 제2항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물품의 배송수수료 : 물품의 물량(parcel)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2. 물품의 반품수수료 : 운송장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함.

- 또한 노조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당한 조합활동은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적어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한도 내에 있음은 분명함.

- 따라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회장은 물론이고 상급단체 간부 역시 출입 권한이 있음. 따라서 쿠팡로지스틱스가 내세우는 계약기간 만료 통지 사유는 스스로 조합활동을 방해하여 계약갱신 사유를 만든 뒤 계약 기간만료 통지를 한 것에 지나지 않음.

○ 판매량 등 영업점의 경영사정이나, 원청의 사업방향 변경 등 그 외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다른 사유도 없음.

4. 결어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우회·잠탈한 결과, 스스로의 근로자성 및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입증하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당연히 원청의 사용자성 및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음.

그러나 쿠팡로지스틱스는 택배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에게 해당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다른 사유가 없음에도,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의 일상적 조합활동을 계약기간 만료 통지 사유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택배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임.

또한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지 사유는 조합활동에 대한 형사사건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관련 형사사건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와 대리점 계약 현황으로 본 노동조합 탄압 현황

-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준비위원장 -

※ 본 문서에서는 편의상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쿠팡’으로 호칭함.

1. 생활물류법-표준계약서에 보장된 택배노동자들의 권리

- ‘구역’은 택배노동자의 고용과 수입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며, 구역을 흔드는 것은 택배 노동자의 생존권을 흔드는 것임.
- 2020~21년 택배노동자들의 집단 과로사가 발생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해고나 구역 강제조정에 대한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어 ‘상시적 고용불안’ 상태였던 택배노동자들이, 물량이 넘치고 과로사 위험에 처해도 잘리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사측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음.
- 집단 과로사 사태 이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생활물류 서비스발전법은 10조에서 택배노동자에 대한 6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11조에서 계약해지 요건을 엄격히 정함.
- 또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사들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가 만든 표준계약서에는 당사자와 합의 없이 구역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음. 생활물류법은 택배사업자 등록 요건으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포함함으로써 표준계약서를 사실상 의무화했음.
- 또한 표준계약서에는 분류작업 수행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까지 기재하도록 하여, 사회적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분류작업 배제’까지 포함함.
-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주 60시간 초과 노동과 밤 9시 이후(명절은 10시) 노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

- 이에 따라, 택배노동자들은 이전처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쉬운 해고, 원청과 대리점이 구역을 무기로 휘두르는 각종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분류작업을 하지 않게 되어 출근 시간이 늦춰지고 그 결과 주당 노동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떨어져 과로사의 위험에서 다소 벗어나게 되었음.

2. 쿠팡, 클렌징으로 ‘상시적 고용불안’ 되살려내

- 그러나 쿠팡은 택배산업으로 진입하면서, 대리점과 구역을 보장하지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여 구역을 가변적으로 만든 뒤, 수행률, 2회전 배송율, 명절 배송율 등 각종 서비스 평가기준을 근거로 마음대로 구역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클렌징-위탁구역 조정 협의)를 도입함.
- 원청과 대리점의 계약에서 구역이 언제든지 회수당할 수 있도록 되어버리니, 대리점 역시 택배노동자에게 구역을 명확히 할당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쿠팡 택배노동자들 역시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구역을 보장받지 못하게 됨. 변경을 합의해 줄 구역 자체가 없게 돼 버린 것. 실제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구역 부분이 “조율”이나 “OO광역시 전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음.
- 그 결과,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수행률 하락 등 각종 이유로 언제든지 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으며, 클렌징을 당할 경우 구역이 없어지고 수입이 ‘0원’이 되는 ‘사실상의 해고 상태’에 놓이게 됨.
- 사실이 이렇음에도 쿠팡은 “클렌징은 해고가 아니”라며, “해당 킷플렉서들을 해고하고 말고는 대리점의 책임이며, 대리점이 다른 곳에서 클렌징 된 구역을 입찰을 통해 확보한 뒤 택배노동자에게 할당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대리점이 친절하게 그렇게 해주기도 어려울뿐더러, 당장 2~3개월 수입이 ‘0원’이 된 택배노동자들이 버티기도 쉽지 않고, 새로 구역을 받더라도 잘 모르는 구역의 배송은 2~3배 더 힘들다는 점에서 택배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방식이며, 이는 ‘진짜사장’이 간접 고용 뒤에 숨어, 클렌징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의 지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고분고분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원청 갑질이라 할 것임.
- 이렇게 되니,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클렌징이 무서워 원청과 대리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됨. 심지어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해 쟁의행위를 해도, 쿠팡은 “자신은 사용자 아니고, 쟁의행위를 하건 뭘 하건 수행률을 맞추지 않으면 대리점의 구역을 회수한다”며 클렌징을 하고, 택배노동자가 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불확실하고 기나긴 소송전

으로 가게 되어 2~3년 간 안정적 수입 없이 큰 고통을 받게 됨. 결국 쿠팡은 하청 노동자인 택배노동자의 헌법 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봉쇄하고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임.

- 이렇게 쿠팡은 사회적 합의 이후 사라져가던 ‘상시적 고용불안’을 클렌징을 통해 되살려냈고, 쿠팡 택배노동자들을 사회적 합의 이전의 무권리 상태로 만들었음. 그 결과,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사측의 부당한 대우를 거부하거나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시간, 수수료, 구역 등 근로조건 등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음.
- 만약 쿠팡의 이러한 행태를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다른 택배사들도 구역을 가변적으로 만들고 ‘클렌징’을 도입하게 될 것이며, 생활물류법, 표준계약서,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고, 택배노동자들은 다시 합의 이전의 노예적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
- 이러한 상황이 누적될 경우, 코로나에 따른 물량폭증, 명절물량 폭증과 같은 상황이 결합하며 언제든지 다시 이전의 집단 과로사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높이고 있음.

3. 사례

- 택배노조 서울지부 쿠팡 강남지회 조합원 4명은 2023년 7월 자신의 구역 전체 혹은 일부를 클렌징 당함. 이유는 수행을 미달. 당시 송파5캠프에서 일하던 대부분의 쿠팡 킥플렉스 택배노동자들은 2회전 배송을 하지 않고 1차 물량에 대해서만 배송을 해왔는데, 이에 대해 수행을 미달로 클렌징함. 클렌징이 되었다고 쿠팡에서 새로운 구역을 따로 보장 해주지 않았으며, 해당 택배노동자들이 직접 하청영업점들을 수소문하여 일할 수 있는 구역을 찾아다님.
- 택배노조 경기지부 쿠팡 판교지회는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프레시백(보냉백) 회수 거부 쟁의행위를 진행하였음. 그 이후 프레시백 회수율이 클렌징 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명의 조합원이 클렌징을 통보받고 27일부로 구역을 회수당한 바 있음.
- 택배노조 경기지부 쿠팡 분당지회는 1월 마지막 주부터 프레시백(보냉백) 회수거부 쟁의행위를 시작으로 2월 1일 18명(12개 구역)이 전면파업에 돌입함. 2월 14일 기준으로 12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클렌징됨.

[참고] 쿠폰-대리점-택배기사의 계약 구조

[그림1]생활물류법상 영업점의 정의 조항에는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라고 명시되어 있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7911호, 2021. 1. 26., 제정] 현재 시행법령확인

국토교통부(상황총괄대응과-총괄), 044-201-4156

국토교통부(상황총괄대응과-택배서비스사업),

044-201-4153

국토교통부(상황총괄대응과-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044-201-41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영업점”이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림2]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토부가 만든 표준계약서.

3조(계약의 주요 내용)에 위탁지역과 수수료 지급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택배사업자 - 영업점 위·수탁 표준계약서

○○택배사(이하, “택배사업자”라 한다)와 ○○영업점(이하, “영업점”이라 한다)은 택배 운송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택배사업자와 영업점간 거래에 있어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②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계약의 주요내용) ① 택배사업자와 영업점 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____개월) |
| <u>위탁지역</u> | | |
| <u>위탁업무</u> | | |
| 담보 금액·종류 | | |
| <u>수수료 지급기준</u> | 별도 첨부 | |

② 제1항의 위탁업무의 세부적인 내용 및 관련 비용 부담 기준 등은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이 사전 협의하여 이 계약 또는 제20조에 따른 부속합의로 정한다.

[그림3] CJ대한통운의 원청-대리점 계약서, '책임배송지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CJ대한통운 택배집배점 계약서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이하 "CJ대한통운")와 (이하 "계약자")은(는) 택배집배점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택배집배점 계약(이하 "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 당사자의 역할]
 택배업은 네트워크형 플랫폼 사업이자 국민생활 밀착형 편의서비스로서 양 당사자는 상호 협력하여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자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2조 [집배점 명칭 및 책임배송지역]
 ① "계약자"의 집배점 명칭, 형태 및 책임배송지역은 다음과 같다.

| <u>명칭</u> | 형태 | <u>책임배송지역</u> | 비고 |
|-----------|----|---------------|-----------------------------|
| | 일반 | | 상세내역은 첨부 "책임배송지역 리스트" 참조 |

② 향후 책임배송지역의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자"가 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책임배송지역 내 물량을 처리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CJ대한통운"과 "계약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책임배송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이하 "CLs")와 _____ (이하 "영업점")는

일자로 체결한 택배 영업점 계약서(이하 "원 계약서") 제2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서(이하 "본 합의서")를 체결한다. 본 합의서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원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 계약의 즉시해지

① CLS는 영업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점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원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영업점에 위탁하는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본 항에서 영업점의 직원 또는 영업점이 배송업무를 위탁한 자의 행위는 영업점의 행위로 본다.

1. 영업점의 폐업, 영업취소, 영업정지, 기타 사업상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CLS가 더 이상 영업점에게 배송업무를 위탁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경우
2. 영업점이 원 계약에 의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이유 없이 거부하였을 경우
3. 영업점이 원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개인정보보호의무 또는 정보보안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영업점이 다음의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구분 | 정의 | 해지 기준 |
|--------------------------------------|--|-------------|
| 2회전 배송 미수행 | CLS와 계약된 배송시간대(주간, 야간)별 1일당 2회전 배송업무 미수행 기간 및 건수 | 2주 동안 2건 이상 |
| 신선식품 배송율 | CLS와 계약된 권역에서 신선식품 배송 월 평균 비율 | 95% 미만 |
| 월 수행율 | 할당된 서브 라우트에 대한 daily coverage의 월 평균 비율 | 95% 미만 |
| 휴무일 배송율 | 주말, 공휴일 배송업무 수행의 월 평균 비율 | 70% 미만 |
| 명절 당일배송율 | 명절(추석, 설) 당일 배송업무 수행 기사비율 | 40% 미만 |
| Promised Delivery Date ("PDD") 미스 비율 | 영업점의 지연배송으로 인해 PDD 이후 배송된 Parcel의 월 평균 비율 | 0.5% 이상 |
| 파손율 | 영업점 및 영업점의 인력 등에 의한 월 평균 | 0.08%이상 |

| 구분 | 정의 | 해지 기준 |
|-----|-----------------------------------|--------|
| | 파손율 | |
| 회수율 | 할당된 반품 물품에 대한 월 평균 회수율 | 90% 미만 |
| | 할당된 프레스백에 대한 월 평균 회수율 | 90% 미만 |
| | 긴급 이슈나 고객요청에 의한 프레스백에 대한 월 평균 회수율 | 95% 미만 |

5. 영업점이 배송업무 수행 중 주거침입, 폭행, 모욕, 재물손괴,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6. 영업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훼손,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7. 영업점이 물품을 무단으로 열람 또는 개봉한 경우
8. 영업점이 배송업무 수행 중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객 또는 제3자와 몸싸움, 언쟁을 벌인 경우
9. 영업점이 CLS가 지정한 수화인 또는 장소에 물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송하지 않은 경우
10. 영업점이 원 계약 제10조 제5항에 따른 조치나 교육을 미이행한 경우
11. 기타 영업점에게 원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에 따라, 쿠팡은 ‘수행률’을 이유로 마음대로 대리점의 구역을 회수할 수 있고, 연쇄적으로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노동자 역시 구역과 물량이 사라져 수입이 ‘0원’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 이는 구역을 명시하도록 한 생활물류법과 구역 변경에 ‘협의’가 아닌 ‘합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표준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택배노동자 보호라는 법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음.

4. 하청영업점 재계약 거부를 통한 집단 해고, 노동조합 무력화



Tel : 02-6150-6498 www.coupangls.com

발신일자 2023. 12. 27.
수 신 안다물류㈜
참 조 담당자
제 목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와 귀사 간에 2023년 3월 8일자로 체결된 택배 영업점 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4년 3월 7일입니다. 이에 귀사와의 위탁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2024년 3월 7일자로 종료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3. 이번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계약 종료는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당사와 귀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① 귀사 소속 임원 및 배송기사들의 당사 임직원들에 대한 폭행, 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
 - ② 귀사의 대표자 및 소속 임원, 배송기사들의 당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 ③ 기타 신뢰관계 훼손 행위
4. 위탁계약 상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위탁계약에 따라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신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 (직인생략)

- 지난 2023년 12월 27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쿠팡)는 택배노조 쿠팡 분당지회 조합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영업점에 대해 '계약종료'를 통보함.
-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진짜사장 원청이 간접고용 제도를 악용하여 하청 노동자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든 뒤 마음대로 해고하는 대표적 원청갑질임.
- 쿠팡은 계약종료 사유로 2023년 4~5월 노동조합 창립 당시 벌어진 총돌, 쿠팡의 부당한 갑질에 대한 해당 영업점의 기자회견 등을 근거로 하고 있음.
- 쿠팡이 근거로 든 당시 총돌은 쿠팡이 상급단체 노동조합 간부의 출입을 봉쇄하고, 심지

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출입까지 봉쇄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그 원인 제공자는 쿠팡임.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임.

- 이번 쿠팡의 '계약 종료'는 노동조합이 있는 하청회사(영업점)를 없애버리는 전형적인 원청갑질이자 악성 노조 탄압, 노조 말살 시도이며,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 해고사태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

5. 기타 /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

- 쿠팡은 캠프 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의 출입을 막고 있고, 심지어 “근무시간이 아 니”라며 캠프 소속 조합원의 출입까지 막고 있음.
- 쿠팡 일산캠프에서는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소식지 배포, 서명운동)을 하자 “캠프 내에 서 업무 외 활동을 한다”며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함. 출입이 제한되면 물량을 받을 수 없 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된 것임.
- 노동조합법 81조 1항은 ‘사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쿠팡은 간접고용의 뒤에 숨어, 금지 행위들을 모두 하면서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행위를 해도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쿠팡택배 노동자들의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사실상 전혀 보장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4. 필요한 대책들

(1)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 현재 생활물류법상 등록요건인 위수탁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야 함. 이는 표준 계약서의 원 취지에 어긋나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는 의미임.
- 그리고 표준계약서의 근본 취지는 원청, 대리점의 갑질 방지, 그리고 이를 통한 ‘택배노동자의 고용안정’임. 고용이 안정되어야 사측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사측에 근로환경 개선 요구도 할 수 있기 때문.
- 그러나 쿠팡-대리점 계약서, 대리점-택배기사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계약서가 아니라, 표준계약서에 어긋나고 그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계약서임.

- 따라서, 애초 국토부가 택배사업자 등록을 받을 당시 해당 계약서에 대해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지 않았다”며 반려했어야 했음. 비록 늦었지만 국토부는 쿠팡의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만들어지도록 지도 감독해야 함.

(2)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 상시 해고제도는 극심한 고용불안을 부르며, 이는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게 됨. 헌법이 노동 3권을 인정하고 노동법이 이를 보장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상 극심한 고용불안과 노동 착취, 그리고 이에 따른 저항과 사회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임.
- 노동부는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상의 상시 해고제도인 클렌징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하며, 상급단체 간부 출입 제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출입 제한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함.

(3) 클렌징, 비례의 원칙 위반… 폐지해야, 고용불안을 낳지 않는 서비스평가제도 도입 필요

- 타 택배사에도 쿠팡과 같은 평가지표들이 존재함. 그러나 이를 통해 마음대로 구역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택배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낳지는 않으며, 불이익을 주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구역을 빼앗거나 해고하지 못함.
- 클렌징 기준의 핵심인 수행률은 일종의 당일배송률이라 할 수 있음. 수행률이 떨어졌다 해서 배송이 안 되는 것이 아니며, 조금 늦더라도 대부분 문제없이 배송됨.
- 그런데도 수행률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택배노동자의 밥줄인 구역을 빼앗고 사실상의 해고 상태로 만드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과도하고 부당한 불이익임.
- 따라서 쿠팡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과도하고 부당한 제도인 클렌징을 폐지하고, 고용불안을 낳지 않는 서비스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함.

(3) 생활물류법-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서 작성

- 쿠팡은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구역을 보장하고,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4) 노조법 2, 3조 개정

- 지난 10월 13일 쿠팡 택배기사 사망 사건에 대해 쿠팡은 “자사 직원이 아니다”라는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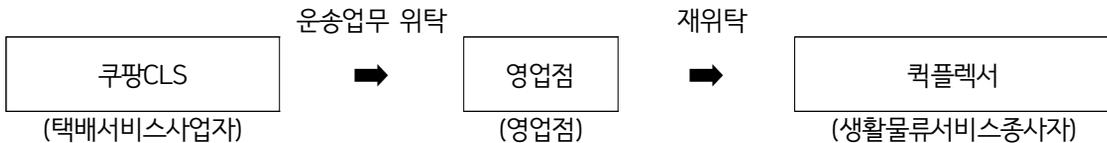
을 보임.

- 이는 책임회피이자 원청 갑질로, 조속히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어 진짜 사장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임.

쿠팡의 대리점 계약 해지, 클렌징 제도의 법률적 문제

- 조혜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 -

1. 생활물류법 취지를 전면 몰각하는 계약조건의 설정



각 주체는 모두 생활물류법 적용대상에 해당함.

- 쿠팡CLS: 생활물류법 제2조 제4호의 택배서비스사업자
- 영업점: 생활물류법 제2조 제5호의 영업점에 해당
- 킷플렉서: 생활물류법 제2조 제6호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해당

생활물류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쿠팡 킷플렉서와 같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가 있음. 종사자 보호를 위해 여러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생활물류법은 크게 최소한의 업무 보장, 안정적 계약관계의 유지라는 두 가지 내용을 마련하고 있음. 쿠팡CLS와 영업점 간 계약내용 중 특히 배달 구역 회수(클렌징) 조항은 이와 같은 생활물류법 취지에 전면으로 반하여 그 자체로 법 위반사항에 해당함. 여기에서 더 나아가 쿠팡CLS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불안정한 계약관계 형성에 일조하고 있음.

계약 내용 중 주된 법률위반 조항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위탁업무 범위 미설정과 배달 구역 회수(‘클렌징’) 조항

생활물류법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가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예측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최소한의 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쿠팡CLS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고 언제나 위탁업무의 변경 및 회수가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함.

생활물류법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생활물류법 제5조5):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등록 및 변경 시 영업점의 명칭과 위치 규모 등을 정한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생활물류법 제32조6):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

-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①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것
 2.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 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이하 생략)

-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표준계약서)**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5.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부가 공고한 택배서비스사업자 - 영업점 간 표준계약서 제3조는 택배서비스 사업자가 영업점에 위탁하는 지역과 업무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생활물류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영업점에 위탁하는 경우 영업점이 담당하는 구역을 특정하게끔 정하고 있음. 영업점의 담당 구역 특징은 해당 구역의 물량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당 영업점의 최소 물량 또는 고정적 물량 위탁을 보장하는 근거가 됨. 영업점이 담당하는 구역의 업무는 곧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택배기사들의 업무와 직결되므로 영업점의 담당 구역 특징은 최종적으로 택배기사들에게 최소한의 물량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함.

일례로 CJ대한통운의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인 CJ대한통운과 영업점인 집배점 간 계약서에서 집배점의 명칭과 책임배송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책임배송지역의 상세내역을 별도의 리스트로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점의 명칭 및 위탁 지역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CJ대한통운 택배집배점 계약서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이하 "CJ대한통운")와 (이하 "계약자")은(는) 택배집배점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택배집배점 계약(이하 "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 당사자의 역할]
 택배업은 네트워크형 플랫폼 사업이자 국민생활 밀착형 편의서비스로서 양 당사자는 상호 협업하여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자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2조 [집배점 명칭 및 책임배송지역]
 ① "계약자"의 집배점 명칭, 형태 및 책임배송지역은 다음과 같다.

| <u>명칭</u> | 형태 | <u>책임배송지역</u> | 비고 |
|-----------|----|---------------|---------------------------------|
| | 일반 | | <u>상세내역은 별부 "책임배송지역 리스트" 참조</u> |

② 향후 책임배송지역의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자"가 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책임배송지역 내 물량을 처리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CJ대한통운"과 "계약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책임배송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쿠팡CLS와 영업점 간 계약은 위탁지역을 전혀 할당하지 않고 위탁물량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언제든지 영업점 및 콕플렉서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음. 쿠팡CLS와 영업점간 계약서 제3조는 '영업점에게 어떠한 독점적 권리 또는 최소 물량 또는 고정적인 물량의 위탁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쿠팡CLS는 언제든지 영업점의 배송구역을 변경, 회수할 수 있고 그 결과 사실상 영업점

이 배송업무를 종료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연쇄적으로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킥플렉서의 업무 역시 사라지게 되므로 킥플렉서는 계약해지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나. 쿠팡CLS의 임의적인 계약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

생활물류법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계약해지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정적인 계약관계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쿠팡CLS는 영업점 뿐 아니라 직접 계약관계도 없는 킥플렉서의 행위마저 문제삼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생활물류법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생활물류법 제10조7):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생활물류법 제11조8):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계약 위반 사유 발생 시 이를 시정

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0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① 택배서비스사업자(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의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총 계약기간(최초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갱신하려는 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년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중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총 계약기간 6년을 초과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지위 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갱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거절의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생활물류법 제32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부가 공고한 택배서비스사업자 - 영업점 간 표준계약서 제16조는 영업점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뒤에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함.

생활물류법은 택배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질적인 장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급적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계약이 일정기간 갱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에게 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기간을 두고 가급적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에서 택배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영업점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마련해 둔 것 역시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계약기간 보장을 염두에 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쿠팡CLS가 체결한 영업점 계약서에 딸린 부속합의서에 의할 때, 쿠팡CLS는 영업점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물류법의 취지를 전면 몰각하고 있음. 쿠팡CLS는 단지 영업점의 계약 위반 행위뿐 아니라 영업점 직원 또는 배송업무를 위탁한 자의 행위를 전부 영업점의 행위로 간주하고 누구든 쿠팡CLS가 제시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2.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조건 설정

공정거래법은 제45조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포함됨.

쿠팡CLS의 영업점 계약은 쿠팡CLS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영업점에게 부당한

③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종사자 간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있음. 앞서 살펴본 배송 구역을 쿠팡CLS가 언제든지 임의로 회수할 수 있는 클렌징 조항 역시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 중 하나이며, 영업점에게 모든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문제됨. 쿠팡CLS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물적사고에 대하여 그 발생 원인이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불문하고 사고로 인한 모든 비용은 영업점의 부담으로 하며 (쿠팡CLS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확인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쿠팡CLS는 면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쿠팡CLS는 본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고발생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할 수 있음.

3.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불공정 사례

가. 캠프 내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코드삭제 및 입차제한

캠프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킥플렉서들이 조합가입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 등을 이유로 다른 킥플렉서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노동조합 소식지를 나눠줌. 그러자 쿠팡은 해당 행위가 업무를 방해하며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라는 이유로 해당 킥플렉서들의 코드를 막아버리고 캠프입차를 제한함. 그 결과 킥플렉서는 운송사와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됨.

쿠팡은 킥플렉서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운송사로, 쿠팡은 킥플렉서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 나아가 본인들이 행위는 캠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다른 킥플렉서들의 업무수행 중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임. 게다가 킥플렉서들은 계약을 체결한 운송사 측과 계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니 쿠팡의 배송업무 외에도 다른 배송업무(식자재 운반, 세탁물 운반 등)를 수행할 수 있으니 법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쿠팡의 노동조건을 보고 쿠팡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송사와 계약을 체결한 킥플렉서들에게 다른 업무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일거리를 찾아보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음.

이러한 쿠팡의 행위는 그 자체로만 놓고보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인 쿠팡이 조합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조치를 취한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함. 하지만 쿠팡의 조치에 대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원

심은 쿠팡이 사용자임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조치가 반드시 위법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입장. 나아가 쿠팡의 사용자성은 본안에서 다툴 사안이므로 가처분 단계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여 쿠팡의 조치의 금지를 구하는 킥플렉서들의 신청을 기각하였음⁹⁾.

나. 소속 킥플렉서들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운송사와 위탁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례

특정 운송사 소속 킥플렉서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활동에 적극적이었다는 이유로 해당 운송사의 운송위탁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쿠팡은 위 사유를 포함한 몇 가지 이유를 들며 운송위탁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음. 그 결과 해당 운송사 소속으로 킥플렉서 업무를 수행하던 조합원들은 수행할 업무가 사라져 줄지에 계약이 해지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됨.

이러한 쿠팡의 행위 역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문제가 되는 법률관계는 쿠팡과 킥플렉서가 아닌 쿠팡과 운송사 사이의 계약으로, 운송사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음. 해당 운송사에 속해있던 조합원들의 경우 쿠팡과 직접적으로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쿠팡의 계약갱신 거절이라는 법률행위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를 문제삼기에 난감한 측면이 존재함.

4. 결론을 갈음하여

당일배송과 프레쉬백 회수 등 쿠팡 킥플렉서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성격에 의할 때 쿠팡이 킥플렉서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구조. 그럼에도 쿠팡은 오직 운송사와의 위탁계약만 체결는 형태로 사용자성을 지우려고 하고 있음. 다른 택배사와 달리 쿠팡은 운송사에 대한 제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킥플렉서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킥플렉서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 바로 구성하여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함. 결국 쿠팡의 사용자성을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받지 않으면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계약구조를 설정한 현 상황은 노동법은 물론 헌법 상 노동3권도 무시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를 타개할 방법이 절실한 상황임.

9) 현재 항고심 진행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958

쿠팡의 노동을 대하는 방식의 문제와 불법성

- 박석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1. 쿠팡CLS의 ‘클렌징(배달구역회수)’ 제도는 실정법상 위법한 제도이다.

1) 쿠팡CLS는 위탁업무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또 클렌징(배달구역회수) 조항을 설정하는 등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위탁업무의 변경 및 회수가 가능하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즉, 법령(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시행령 제2조)에서는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 등록시 및 변경시 영업점의 명칭과 위치, 규모 등을 정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표준계약서 제3조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에 위탁하는 위탁지역과 위탁업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제도화된 이유는 영업점의 담당구역 특성을 통해 영업점에 해당 구역의 물량을 보장하고 또 이를 통해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택배기사들에게 최소한의 물량을 보장하여 고용안정과 최소생계를 보장한다는 법제정 취지에서 법제화된 것이다.

그런데도 쿠팡CLS의 경우에는 영업점과 계약하면서 전혀 위탁구역을 할당하거나 명시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른바 클렌징 조항을 두어 위탁물량을 “0”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언제든지 영업점이나 택배기사들과의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쿠팡CLS와 영업점 간 위탁계약서 제3조에는 “영업점에게 어떠한 독점적 권리 또는 최소 물량 또는 고정적인 물량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영업점의 배송구역을 변경, 회수할 수 있고, 그리되면 영업점의 업무가 종료되고 아울러 영업점 소속의 택배기사들의 업무도 사라지게 되어, 결국 택배기사들의 계약도 해지되는 극히 부당한

상황이 초래된다.

2) 이런 쿠팡CLS의 계약조항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0조와 제11조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당연무효임이 분명하다. 법 제10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제1항에서는 “택배서비스사업자(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총 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법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제1항에서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3)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는 “영업점이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에 일정한 구역을 할당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간 표준계약서 제16조에도 영업점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뒤에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쿠팡CLS는 영업점에 일정한 구역을 할당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영업점과의 계약서에 부속된 부속합의서를 구실로, 영업점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그 결과는 택배기사들의 계약해지와도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단지 영업점의 계약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영업점 직원 또는 배송업무를 위탁한 자의 행위까지 전부 영업점의 행위로 간주하고 누구든지 쿠팡CLS가 설정한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도 택배기사들의 계약해지와도 연쇄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4) 결국 쿠팡CLS측의 이른바 “클렌징(배달구역회수)” 등 관련 위탁계약 조항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의 강행규정에 위반되고 있는 것이다.

2. 쿠팡CLS의 영업점 위탁계약 조항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또한, 쿠팡CLS의 영업점 위탁계약 조항들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영업점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있어서, 공정거래법 제45조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이고 실정법상 허용되지 않는 계약임이 분명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클렌징 제도를 통해 배송구역을 언제든지 임의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영업점에게 모든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3. 쿠팡CLS의 클렌징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 이른바 ‘클렌징’(배달구역회수) 제도의 실시 상황을 살펴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법이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청 택배사인 쿠팡CLS 측에서 정해 놓은 클렌징 기준에 미달하는 실적을 보이면, 해당 택배기사는 물론이고 영업점까지 클렌징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부당하고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쿠팡CLS는 클렌징 기준을 임의로 설정하고 있으며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고 한다.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 상의 계약해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하고, 별도의 기준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엄격한 클렌징 기준을 만들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클렌징을 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적용은 선택적으로 하면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클렌징하면서 택배기사들을 부당하게 길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2) 특히 노조 설립이후 더욱 부당한 클렌징 사례(부당한 무급대기발령 및 부당해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노조설립 이후 사업장 출입을 저지당한 택배기사도 있고, 노조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 사업장 출입 제한 조치를 내리고는 출입제한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자 수행률 미비를 이유로 클렌징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3)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는 거의 전근대적 막장 경영행태에 가까운데도, 마치 첨단 경영 기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되어 횡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 위험, 그리고 법제도적 위험이 있다고 하겠다.

4. 맺는 말

쿠팡CLS는 위법부당한 계약 시스템을 악용하여 단숨에 택배시장 점유율 제2위 사업자가 되었다. 오랜 갈등과 진통을 거쳐 수많은 택배노동자의 희생위에 어렵사리 마련된 사회적 합의 시스템을 쿠팡CLS가 밑바닥에서부터 갉아 먹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

또 실정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택배산업의 현실 생태계를 마구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쿠팡CLS가 일종의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택배서비스 사업자도 쿠팡CLS와 같은 마구잡이 계약해지 제도를 도입하려는 유혹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만일 이런 상황이 계속 용인된다면, 마치 “악화 惡貨가 양화 良貨를 구축 驅逐”하는 것과 비슷한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쿠팡CLS에서 강행하고 있는 클렌징 제도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은폐,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제도로써 민형사상으로 응징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도 응징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정부당국이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적법하게 법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의 횡포를 제어해야 한다

- 김혜진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1. 쿠팡의 노동자 해고와 노동조합 탄압

- 발제문을 통해서 쿠팡CLS가 택배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다양한 방식, 즉 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 영업점에 대한 일방적 재계약 거부를 통한 집단해고, 그리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출입제한 조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쿠팡CLS는 ‘해고’라고 불리지 않는, 하청업체 계약해지를 통한 집단해고와 개인에 대한 해고를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쿠팡의 일방적인 해고는 쿠팡의 다른 자회사에서도 확인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경우 일용직과 계약직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 쿠팡은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의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노동자들을 계약에서 탈락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로 소송을 해야 쿠팡이 노동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탈락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조치도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일용직의 경우 이번 MBC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블랙리스트가 ‘해고’로 기능하고 있다. 이번에 보도된 블랙리스트에 의하면 ‘영구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와 ‘일정 기간 동안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노동자들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¹⁰⁾ 매일 일용직 채용에 지원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의 해고’인 것이다.
- 즉 쿠팡은 ‘하청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통한 집단해고’라는 간접고용의 전형적인 해고수법에서부터, 기간제·일용직의 계약갱신 거부, 일용직 채용 지원을 못하게 만드는 블랙리스트,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클렌징’이라는 이름의 구역회수와 ‘출입 제한’까지 여러 고용형태가 가진 약점을 모두 활용한 자유로운 해고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런 해고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가르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서 활용된다는

10) MBC는 2017년에서 2023년 10월까지 총 16,450명이 등재된 쿠팡 블랙리스트 자료를 입수했다고 보도함. 이에 따르면 대구1센터로 등재된 7971명은 영구채용불가인 것으로 추정됨.

점에서 매우 심각한 부당노동행위이다.¹¹⁾

- 해고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해고를 빌미로 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고, 현장을 개선할 가능성을 없앤다는 점에서 매우 질이 나쁜 행위이다. 그래서 일방적 해고는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부당해고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쿠팡은 왜곡된 고용구조를 활용하여 편법적으로 여러 해고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제도적인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제문에서 제기한 대로 생활물류법을 통한 규제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생활물류법 자체가 노조법과는 달리 실질적인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그런 점에서 발제문에서 이야기한대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하여,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계약직 노동자들의 갱신기대권을 당연한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블랙리스트나 클렌징 등 ‘해고’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사실상 ‘해고’를 하는 다양한 형태에 대해 그것을 ‘부당한 해고’로 간주하고 일반적인 해고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2. 쿠팡의 일방적인 현장 통제

- 쿠팡이 이렇게 ‘클렌징’이나 ‘출입제한’ ‘블랙리스트’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해고를 시도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도 있지만, 현장을 통제하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발제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클렌징’이라는 이름의 해고는 플래시백 회수율이 낮다는 이유로도 자행되고, 휴무일이나 명절 배송률을 임의로 결정하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통제 장치이다.
- 쿠팡은 적은 인원으로 최대한의 물량을 처내기 위해 노동자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경우 지금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당 UPH를 통해 노동자들을 압박해왔다. 이전에는 UPH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공개적으로 불러내어 혼을 내거나 압박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생긴 이후로 회사는 UPH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MBC의 보도를 통해 여전히 UPH가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회사는 작업량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에게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은근하게 흘리면서 노동자들에게 업무 압박을 가하고 있다.¹²⁾ 다른

11) 쿠팡의 블랙리스트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의 명단도 확인됨. 노동조합 집행부는 ‘허위사실 유포’나 ‘고의적 업무방해’ ‘근태불량’ 등 여러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음. 대다수가 영구채용불가로 되어 있음.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근태불량을 사유로 든 것은 주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많음.

업체의 경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숨기지만 물류센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블랙’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고, 관리자들이 쉽게 언급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 쿠팡CLS는 업체 계약해지와 클렌징 압박을 통해 영업점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도록 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현장관리자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물류센터의 현장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확인서’를 요구하고, 개인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하며, 그것이 재계약이나 지속적 채용이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회사측이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하는 블랙리스트도 현장 관리자들의 현장통제의 일환이다. MBC 보도에서 확인된 것처럼 산재를 신청했거나 회사의 방침에 불만을 제기한 노동자들, 그리고 회사의 문제를 언론이나 유튜브 등으로 알린 노동자들이 대거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도 불만을 제기하는 노동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현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 이는 쿠팡이 새벽배송이나 로켓배송처럼 빠른 배송을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때문이다. 이는 인력의 부족 때문인데, 쿠팡은 물량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적인 인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쿠팡은 주문에서 마지막 배송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면서 변동하는 물량에 따라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일을 시키고 있다. 쿠팡의 전략은 안정적으로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매일 변화하는 물량에 따라 인력채용도 유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충분히 안정적인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새벽배송이나 로켓배송과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노동자들을 쥐어짜거나 갈아넣는 구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제도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

3. 쿠팡의 노조 불인정

- 쿠팡택배본부(준)의 사용자인 쿠팡CLS는 자신이 노조법상 사용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발제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법원은 원청이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인정해오고 있으며, 쿠팡로지스틱스가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지배한다는 점에서 쿠팡CLS가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로서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것이다. 그런데 쿠팡이 이와 같은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쿠팡CLS가 실질사용자라는 점을 노동자들이 법률적으로 증명하도록 만드는 현행 노조법의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12) 쿠팡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성희롱이나 폭언, 도난 등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함. 그러나 MBC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노동자들을 직접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주로 산재를 신청했거나, 회사측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문제를 지적한 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많음.

- 쿠팡풀필먼트서비스나 쿠팡이츠의 경우와 다르게 직접고용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는 어렵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교섭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라이더유니온이나 쿠팡물류센터지회의 경우 모두 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라이더유니온과 쿠팡이츠는 현재 50차시 정도 교섭을 하고 있지만 회사는 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음. 기본배달료 인상과 타임오프가 핵심이지만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단체협약과 관련한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한 장씩 일독을 하는 중이라 올해가 가기 전에 1독도 어려울 전망이다.
-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쿠팡CLS가 상급단체간부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처럼, 쿠팡풀필먼트서비스도 노동조합 간부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선전전을 하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다. 노조가 사측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를 고소하여, 경찰이 쿠팡물류센터 지회의 간부와 공공운수노조를 압수수색을 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노조의 선전전을 빌미로 교섭을 해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섭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지회 간부들을 재계약에서 탈락시키거나 현장에서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등 노조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쿠팡 사측에게 노조는 교섭의 상대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대상일 뿐이다.

4. 쿠팡의 소송전과 여론전

- 쿠팡은 소송전도 매우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쿠팡은 여러 쟁점을 제기하여 소송을 길게 끌면서 그 사이에 노조를 탄압하여 무력화하려는 방식을 구사한다. 자신들이 불리한 소송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판결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유리한 소송은 빠르게 진행하여 그 결과가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쿠팡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사회에 알렸다는 이유로 산재 중에 해고당한 노동자의 경우, 소송을 시작한지 3년 5개월이 지나도록 1심 선고조차 나지 않고 있다.
- 쿠팡 뉴스를 통한 여론전도 지속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비판적인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언론에 대해 소송을 통해 압박을 한다는 점이다. 쿠팡은 천안 물류센터 식당 하청 업체 노동자의 심정지 사망 사건을 보도한 대전MBC 기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를 거치지 않고 기자 개인에게 거액의 소송을 건 것이다. 동탄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소식을 보도한 일요신문과 기사를 상대로도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프레시안도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받아 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겨레의 보도를 대상으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MBC의 블랙리스트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쿠팡은 경찰청 출입기자와 그동안

쿠팡에서 직접 일을 해보고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기자, 그리고 유튜브에 쿠팡의 상황을 알린 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제보한 MBC와 기자에게도 소송 압박을 했고, 제보자와 쿠팡대책위원회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다. 정당한 비판여론을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과 블랙리스트 등재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5. 쿠팡에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 쿠팡은 고용규모가 6만 6천명에 달하며 전체 기업 중 고용규모로 2,3위를 다투고 있다. 쿠팡은 직접고용을 자랑하지만 옛말이다. 택배노동자도 직접고용인 쿠팡친구도 쿠팡CLS로 전환했고, 영업점을 통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더 늘어난다. 물류센터도 3개월 수습, 9개월 기간제, 그리고 1년 기간제로 채용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은 매우 소수이다. 일용직 채용도 매우 많다. 쿠팡플렉스는 개인사업자 형태이고, 쿠팡이츠도 직접고용 형태의 특수고용에서 이제는 협력사를 만들어서 라이더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쿠팡은 불안정노동을 확대하여 쉬운 해고와 쉬운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 쿠팡의 노동현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많다. 상시 심야노동과 압도적으로 많은 산재사망, 냉난방 장치 없는 현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쿠팡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조치 하지 않았고, 아직도 병원에 누워있는 2차감염 피해자에 대해서도 교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모르쇠하고 있다. 장덕준 노동자의 과로사망 이후에도 유가족과의 교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마치 해결할 것처럼 나서다가 사회적 목소리가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몰라라 하고 있다.
- 쿠팡은 거대한 플랫폼기업으로서 새벽배송이나 로켓배송 등 우리사회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기업의 전략은 법의 미비점을 활용하여 결국 노동자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쿠팡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기업인지 이번 블랙리스트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사회적협약'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고자 했지만 쿠팡이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쿠팡이 노동자들의 권리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고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면 시민사회가 더 많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파riba케뜨가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었는지 그 교훈을 되새기도록 쿠팡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끝>

고용노동부 관련 입장

- 고용노동부 담당자 -